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12.

유영하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 8.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 (2024. 11. 12.)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 3. 31.)

상정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 4. 2.)

상정 · 축조심사

○ 제43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 5. 1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1차 정무위원회 (2026. 5. 1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유영하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8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곽 현 준)

1. 보험사기 형사처벌 시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 제한 등

□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설계사등”이라 함)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또한, 보험설계사등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시 그 사유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가 보험설계사가 법 제8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3항 및 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생 략)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3.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용한 사기에 한정한다)----------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가 제8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법 제102조의2),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ⅰ)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및 ⅱ)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법 제102조의3)하고 있음.[1)]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사기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로서 보험사기 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2)]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4조제2항·제87조제2항·제89조제2항에 따라 각각 그 자격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됨.[3]

□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설계사등이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에 대해 보험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금융감독원은 법 제133조[4]를 근거로 검

---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제183조제1항"·"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로,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으로 본다.

3)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보험업법」**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사 등을 거쳐 이를 재확인하고 있고,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이루어지기 전 금융위원회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 이후 제재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등은 보험사기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5]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등에 대한 처분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소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소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소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소계
보험설계사	20	38	58	29	39	68	45	63	108	94	140	234
보험중개사	-	-	-	-	-	-	-	-	-	-	-	-
보험대리점	2	-	2	1	-	1	-	1	1	3	1	4
계	22	38	60	30	39	69	45	64	109	97	141	238

주: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는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에 대한

②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문재용, "보험사기 전과에도… 버젓이 보험 판 설계사들", 매일경제, 2022.9.27. (2024년 10월 2일), <https://www.mk.co.kr/news/economy/10469390> 등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등이 보험사기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보험설계사등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험설계사등이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전까지 영업을 지속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내용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보험설계사 등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 개정안 부칙에서 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격 제한의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 제한 시기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6)]

□ **둘째**, 안 제86조제3항은 법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7)]에 해당하

6) 참고로, 법 제84조의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를 정한 법률 제10394호(2010. 7. 23.) 개정 당시에도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바 있음.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부칙 제4조(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2항제1호, 제87조의2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제1호·제2호, 제89조제2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여 보험설계사 등이 현재 또는 등록 당시 그 자격이 제한되는 자임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설계사등의 보험사기 등 범죄행위가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제재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법원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험사기 등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 처분 전까지 영업을 지속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및 유사 입법례[8]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임.

□ **셋째**, 안 제86조제5항은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가 안 제84조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보험회사등이 알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제재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7)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등

○ 현행법상으로는 보험회사등이 소속 보험설계사등이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실무적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행위와 관련한 형사처벌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사실 보고에 한정되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제133조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판결문 등을 요청하여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행정제재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형사처벌 사실을 인지한 경우의 금융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 외 자구상의 수정사항으로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만 보고의무가 부과되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9)]

9) 아울러, 안 제86조제3항에 규정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및 안 제86조제5항에서 보험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의 해당 조문은 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 여부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2. 보험사기 형사처벌 시 법인보험대리점·중개사 임원 자격 제한

□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제1항 및 제89조의2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① ----------

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를 각각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10)]

10)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그 중 형사처벌 관련 요건을 보면,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③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134조 및 제136조[11]에 근거하여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

구분	세부 내용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기 전까지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